

201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안)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7.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인증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조직)을 인천광역시장이 지정·육성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도록 육성하는 기업(조직)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2016년 제2차 지정공모 계획

- 2016년 제2차 지정 : 2016. 7월 ~ 2016. 8월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7. 1(금) 09:00 ~ 7. 15(금) 18:00까지**
- 지정 결정 : 2016. 8월 말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4. 지정혜택

가. 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의 공모에 참여자격 부여

- ❖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 1~50인까지, 1년단위 2년까지(3년이내)
- ❖ 사업개발비 지원 : 연간 5천만원 이내, 2년까지(3년이내)
- ❖ 전문인력 사업비 지원 : 월 200만원 한도, 2년까지(3년이내)

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홍보,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5. 대상기업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

6. 지정방법

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건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지역특성 등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 심사결정

7. 지정요건

가. 조직의 형태

-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에 두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4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5년 4월 30일 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예시 : 공고기간 '15.4.1~'4.20. 지정신청일 '15.4.20 , 영업활동기간 1~3월
-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채용인력에 인천시민이 있어야 할 것
-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 최소 1명 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인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 이상으로 봄.

다. 사회적 목적 실현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을 적용

<사회적목적 실현 인증심사 기준>

-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지정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이상). 단,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취약계층의 비율'로 인정한다.

- ①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 취약계층 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2) 일자리제공형

- ❖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16.12.31까지는 30%)
- ②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③ 취약계층에게 관장은 일자리 제공
 - 관장은 일자리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동종·유사업종의 기업 사례를 참고하여 임금수준, 고용형태,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3) 지역사회공헌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실적은 공고일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되어야 한다.
 - 실적은 공고일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4) 혼합형

-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 되어야 한다.(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

- ① 근로자 중 취약계층에게 관장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8. 신청제한(신청자격 불인정)

- 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다.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 : 2016. 1. 1 신청분부터 적용
- 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마.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9. 제출서류

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서식1】

나. 사회적기업 인증(사업)계획서 【서식2, 3】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로의 전환계획 포함 작성

다.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법인 등에 한함)

라.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4-1~5】

- * 신청서의 제⑦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따라 구분 작성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고

마. 유급근로자 공용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 고
				*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표기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지급 대장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바.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이 사실 확인한 최근(공고일 기준 전월)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사. 정관 또는 규약(해당기업)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의 경우
-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아.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의 반드시 대표자 수강이수분에 한하며, 마감일자 이후 수강한 수강확인증은 인정불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5]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1호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차. 기타 시장이 추가 요구하는 자료

- 모든 서류는 각 1부씩 제출

10. 제1차 지정 신청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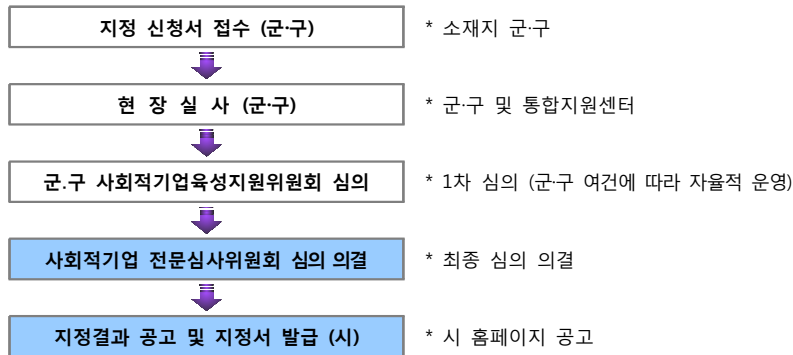
가. 신청기간 : 2016. 7. 1. 09:00 ~ 7. 15. 18:00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군·구청(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신청**

※ 입력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군·구청 담당자 등에 문의

라. 지정절차



※ 현장실사는 지정요건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만 실시

마. 지정 결과 통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게재(2016. 8월 말 발표 예정)
- 지정서 교부 및 안내 : 관할 군·구청(사회적기업 담당부서)

11. 기타사항

- 가. 지정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
-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미공개** 함.
- 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12. 문의사항

- 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참조
- 나. 문의처 : 각 군·구 담당부서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440-4972)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715-55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군·구 담당부서>

군·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중 구	일자리경제과	760-6922	760-7899	중구 신포로 27번지 80
동 구	전략사업추진실	770-6178	770-6399	동구 금곡길 175
남 구	일자리창출추진단	880-7943	880-4608	남구 독쟁이길 151
연수구	일자리창출과	749-8482	749-7689	연수구 원인재로 115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067	453-5778	남동구 소래로 633
부평구	일자리기획과	509-7422	509-7696	부평구 부평대로 168
계양구	지역경제과	450-5764	551-5746	계양구 계산새로 88
서 구	일자리지원과	560-2967	560-2731	서구 서곶로 307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2	930-3639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32	899-3219	남구 용현동 매소홀로 120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제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715,812	3,174,966	4,618,531	5,254,304	5,388,428
60%	1,029,487	1,904,980	2,771,119	3,152,582	3,233,057
월 보험료 납부액	33.252	61.530	89.507	101.828	104.42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15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3%)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통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사함)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주)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나.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예시: 저소득자로 '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 예시: 일반근로자로 '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동종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수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의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39)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75)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육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육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미용 및 미용업 S9612 “육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업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서식 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FAX.)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㉔[], ㉕[], ㉖[])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추천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input type="checkbox"/> 보육 <input type="checkbox"/> 산림 보전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가사 간병 <input type="checkbox"/>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input type="checkbox"/> 고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유통 <input type="checkbox"/> 기타
⑨ 주된 사업내용	명	⑪ 근로자수(B) % ⑫ 취업률(B/A) %
⑩ 업종		
⑫ 사업분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식 4-1~4-5 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서식 2】

사업계획서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만 연계는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서를 작성할 것			
◆ 사업계획			
사업내용	단체·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 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취약계층고용비용	항우 취약계층 고용비용 기재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항우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비용 기재		
사업시행시기		서비스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연, 무연료 구분 →가능한 한 유연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서비스 내용 (내용, 가격 등)	예시) 빵배,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예시) 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빵배 서비스 무연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무연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연료 특강(강화) 실시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예시)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는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신청기업과 지역사회 역할분담 내용		
신청기업과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신청기업	
	연계기업	
	지자체	
	대학·연구소·병원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모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규모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속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익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정액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인건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인건형 사회적 기업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 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 7.30 간병사업 실시 (3,0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 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 경기(2), 광주(2), 부산(2), 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							
연도	부서(처)명	사업명	지원내용	참여인원	지원액 (연간)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	총수입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보조	민간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	총노무비(B)	영업수입(A)/총 노무비(B)
	원 100%	원 %	원 %	원 %	원 %	원	%
참여근로자 관련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 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명)		예시) 기사도우려로서 뺄레,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란 간병업무총 병행	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 회계관리 : 2명 약기(피아노, 바이올린) 연구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	예시) 주40시간 월 100만원 (통상인건)		

※ 공고일 기준도 무방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이내	<p>사업 계획 수립(기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을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이내	<p>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치, 운영위원회 개치,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후속 조치(법인내 사업장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이내	<p>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이내	<p>사회적기업 인증 신청</p>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서식 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 증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 직 형 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 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 사 결 정 구 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 관 · 규 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리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